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기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4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 박기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권영희, 김경영,
김제리, 김종무, 김태수,
김평남, 김희걸, 박기재,
박상구, 송도호, 송명화,
송아량, 송정빈, 신정호,
양민규, 이성배, 이영실,
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
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
최웅식, 한기영, 홍성룡,
황규복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을 기초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.
- 2020년 기준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%를 차지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%에 그치는 열악한 실정임.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주차장 요금 할인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 함. (제7조제1항제7호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043000000010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박기열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원동아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4.30.

회신일 : 2021.05.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제1항에 제7호의2를 신설함에 따라 재정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주차장 이용실적 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안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제1항에 제7호의2를 신설함에 따라,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포함(100분의 50 할인)함으로서, 세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주차장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- * 2021년 3월기준,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수는 5,893가구, 19,717명(가구원수)(서울시 자료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 조도형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분석관(주무관) 원동아
☎ 02-2180-7953
e-mail : dongya1@seoul.go.kr